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9

2023. 6. 13.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3. 6. 2.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3. 6. 2.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13.

2. 제안설명 요지

체육시설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불명확한 요금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통일된 요금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용사용료, 자유이용사용료 신설 및 인상
-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부속시설 사용료 정비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 현 체육시설 사용료는 2018년 이후에 요금이 동결되었으나, 물가가 상승하고 인근 시군 대비 사용료가 낮아 이를 고려한 일부 요금

인상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내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관외자 할증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0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이나,

- 현 체육시설은 영리가 목적이기보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우선이라는 점을 착안 및 주변 타 시군구 요금을 참고하여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5.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